

굿닥터재활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(계약 목적)

- ①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정신 및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반드시 각 호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 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, 계약연장, 계약만료 및 재계약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후부터 연장할 수 있다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①본인부담금 :

1. 1등급 ~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%를 부담한다.

- 2. 1등급 ~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0%를 부담한다.
- 3. 1등급 ~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.
- 4. 등급외자입소비용

1일 기준	28일 기준	30일 기준	31기준
70,000원	1,960,000원	2,100,000원	2,170,000원

【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】

(2025년 기준)

1등급	1일수가	일수	총금액	본인부담 20%	본인부담 12%	본인부담 8%
28	90,450	28	2,532,600	506,520	303,910	202,600
30		30	2,713,500	542,700	325,620	217,080
31		31	2,803,950	560,790	336,470	224,310

2등급	1일수가	일수	총금액	본인부담 20%	본인부담 12%	본인부담 8%
28	83,910	28	2,349,480	469,890	281,930	187,950
30		30	2,517,300	503,460	302,070	201,380
31		31	2,601,210	520,240	312,140	208,090

3-5등급	1일수가	일수	총금액	본인부담 20%	본인부담 12%	본인부담 8%
28	79,240	28	2,218,720	443,740	266,240	177,490
30		30	2,377,200	475,440	285,260	190,180
31		31	2,456,440	491,280	294,770	196,510

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

- 1. 식사재료비 및 간식 : 1일(3식) 3,800원 × 30일 = 342,000원
1일(2회 간식) 1,000×2회×30일 = 60,000원
- 2. 이미용비, 상급침실 이용료, 개인 간식 등 :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.
- 3.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.
- 4. 특별보호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.

③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
- 2.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- 3.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- 4.장기요양등급인정 또는 등급외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
- 5.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,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
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. ※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《별지》 참조

제4조 (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)

-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 한다.
 1. 하루에 3회 이상 영양,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.
 2.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 3.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.
 4.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.
 5.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.
 6.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, 정기적으로 물리(작업)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7.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 8.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9. 지역내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활동참여를 독려하고 연1회는 참여하도록 지지한다.
 10. 감염병관련 정부방침을 준수하며 필요시 면회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
- ②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비용이 입소계약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인 경우 수급자(보호자)와 개별적으로 욕구(의약품등)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한다.

제5조 (특별보호 필요시 구체적인 처리절차)

-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 단, 보호자가 동의하면 격리 및 억제대를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1.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
 2. 감염 등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격리조치가 불가피한 경우
-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, 이용자의 심신상태,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,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의 내용을 동의서로 받는다.
-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보호자에게 권고하고 상급침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제6조 (의료서비스제공 처리절차)

-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수급자(보호자)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응급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은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.
-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,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.

- ④ 대표 및 시설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,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대표 및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,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⑥ 감염자또는 감염위험자의 경우는 감염력이 있는 기간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조치하고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.
- ⑦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,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보호자와 상담하여 장례절차에 도움을 제공한다.
- ⑧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임종돌봄서비스연계를 희망하는지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 절차를 협조한다.

제7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)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. 수급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체적,정신적,성적,경제적,방임,유기등의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
4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5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.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9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10.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

1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을 시설에 즉시 연락 할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6. 애완동물사육금지 등 사설 내 청결수칙을 준수할 의무

③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

1.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비납부내역확인 요구
2.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 요구
3.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요구
4.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5. 시설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력(규정,교육)에 대한 정보를 요구

제8조 (계약의 해제)

① 수급자의 해지

수급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시설의 해지

1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수급자의 이용료가 2회 이상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는 경우(단, 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